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 전승자들도 전승교육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우수 이수자 선정 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학교뿐만 아니라 전승교육사도 대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전단).

II. 검토의견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III. 관계기관 의견

개정안 제19조제1항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이수자가 아닌 자가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면 이수심사 제도가 무의미해질 수 있고, 기량이 부족한 자가 전승교육사가 될 수 있어 이로 인해 무형유산의 전형 훼손 및 단절 가능성이 높아져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충청남도¹⁾는 전승교육사 인정 자격요건의 완화는 필요해 보이나, 무형유산 전승체계 확립과 전승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이수자-전승교육사-보유자’의 단계별 인정을 통한 무형유산의 기·예능적 요소의 보전도 중요하며, 이수자에 대한 지원 확대 없이 전승교육사 인정 자격요건을 완화하면 전승지원금²⁾ 수급만이 목적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임.

1) 충청남도는 전승교육사 인정 자격요건 완화를 위해 현행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의 이수자 전승활동 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함.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나. 시·도무형유산 보유자로서의 경력이나 전승교육사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해당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육성)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원한다.

(전문위원 이 화 실)